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39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 제5호를 제8호로 하고, 같은 조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7호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생활 보장위원회에 관한 사항
6.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 규정에 의한 긴급지원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7. 사회복지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는 폐지한다.
- ③(다른 조례의 개정) 「인천광역시 서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4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사회복지위원회에서”를 “인천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로 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0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예술진흥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예술진흥 조례”로 한다.

제3조 제1호 중 “법 제9조제2항”을 “법 제5조 제2항”으로 하고, 제2호 중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한다.

제11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제12조 중 “법 제9조제2항 및 영 제23조”를 “법 제5조 제2항 및 영 제12조”로 하고,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1항제13호”를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로 한다.

제13조 제1항 중 “영 제24조제1항 및 영 제25조”를 “영 제12조 제1항 및 영 제13조”로 하고, “법 제11조”를 “법 제9조”로 하며, “건축비용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15조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로 한다.

제15조의 제목 “공동주택의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을 “미술장식에 사용하는 건축비용의 비율”로 하고, “영 제25조제2호”를 “영 제12조 제5항의”로 하며, “1,000분의 1로 한다.”를 “각 호와 같다”로 하고, 같은 조제1호 및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영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공동주택 : 건축비용의 1천분의 1 이상
 2. 영 제1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9호까지의 건축물
- 가.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 2만 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나. 연면적 2만 제곱미터 초과 건축물 : 연면적 2만 제곱미터에 사용되는 건축비용의 1천분의 7에 해당하는 금액 + 2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연면적에 대한 건축비용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제29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1호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문화원지원및육성에관한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문화원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6조 제2항 중 “인천광역시서구보조금관리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 보조금관리조례」”로 한다.

제7조 제3항 중 “총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3조 제1항 제1호 중 “총무국장”을 “주민생활지원국장”으로 한다.

제14조 제1항 중 “인천광역시서구재무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 서구 재무회계규칙」”으로 한다.

제15조 중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2호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서구립예술단설치및운영조례”를 “인천광역시 서구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 중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예술진흥법」”으로 하고, “지방자치법”을 “「지방자치법」”으로 한다.

제7조 제2항 중 “위촉하고 구청장이 승인한다.”를 “심의·의결하고 구청장이 위촉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단원의 수시위촉은 당해 예술감독이 실기와 면접을 실시한 후 예술감독의 추천서에 의하여 구청장이 위촉한다.

제9조 제1항 중 “한다”를 “하며, 연임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촉기간이 만료된 예술감독은”을 “예술감독을 연임할 경우”로 하고, “심의”를 “심의·의결”로 한다.

제10조 중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의사를 표명한 단원은 운영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해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3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 관리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하수법」(이하 "법"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과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및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이하 "수질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지하수개발·이용자”라 함은 법 제7조(제13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 혹은 매매, 양도, 상속 등으로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대한 권리와 의무를 인계받은 자를 말한다.
2. “지하수이용부담금”이라 함은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유량계”라 함은 양수되는 지하수의 수량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를 말하며, 적산 유량계, 시간계 등을 포함한다.

제3조(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설치기준 완화) 규칙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단서의 규정에 의거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소규모 시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와 같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

1. 내부케이싱의 안쪽지름이 50밀리미터 이하이고 토출관 지름이 25밀리미터 이하인 경우 중 자동모타펌프(자흡식 자동펌프)를 지상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출수장치,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2. 내부케이싱 안쪽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수중모타펌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수위측정관을 제외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수수료 보조) 구청장은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 지정된 경우,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검사 수수료를 보조하거나, 지정목적에 따른 수질검사항목이 개발·이용목적에 적합할 경우 그 항목검사를 제외할 수 있다.

1. 수질규칙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 수질측정시설”로 지정고시 된 지하수개발·이용시설
2. 법 제17조제2항에 의한 “보조지하수관측망”으로 지정된 지하수개발·이용 시설
3. 전시 기타 비상사태의 발생에 대비하여 “비상급수시설”로 지정된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4. 그 밖에 구청장이 인정하는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제5조(지하수관리위원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영 제4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법 제6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인천광역시 서구(이하 “구”라 한다) 지하수관리 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영향조사서에 관한 사항
3. 영 제26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 오염평가보고서에 관한 사항
4. 영 제26조의4의 규정에 의한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사항으로서 구청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6조(위원회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1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서구 부구청장(이하“부구청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구의회 의원
2. 구 소속 공무원
3. 지하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전문가
4. 영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관련 조사전문기관 소속 임·직원

5. 지하수 또는 환경업무와 관련된 시민단체(「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 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6. 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의 임·직원
 7. 기타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다만, 구 소속 공무원 및 구의회 의원이 위원이 된 경우에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7조(위원회 운영)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하며,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되, 지하수업무담당팀장은 간사를, 지하수업무담당은 서기 업무를 맡는다.
- ⑤간사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회의록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심의 내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 ⑥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관계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⑦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광역시서구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⑧이 조례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8조(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을 출석하여 답변하게 하거나 자료 등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비밀준수) 위원회의 위원 및 기타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업무수행 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0조(지하수관리특별회계의 설치) 구청장은 법 제30조의2 규정에 의거 관할구역 내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이용과 보전·관리에 소요되는 사업비 등을 조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서구 지하수관리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제11조(관리·운영) 특별회계는 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제12조(세입) 특별회계는 법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세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30조의2제4항 제1호 내지 제8호
2.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수수료 보조금 지급
3. 기타 구청장 및 위원회에서 지하수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등

제14조(사무취급 예)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15조(지하수이용부담금의 산정방법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 규정에 의거 관할지역 지하수개발·이용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3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2. 영 제40조의3제1항제1호 내지 제4호
3. 기타 구청장이 별도 규정하는 개발·이용시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이용부담금은 월 별 지하수취수량에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물이용부담금 상당액의 100분의 50를 곱한 것으로 한다.

③지하수이용부담금에 대한 기본금액을 정할 수 있으며, 산정금액이 기본금액 미만인 경우에는 기본금액을 징수한다.

④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부착된 유량계를 토대로 지하수이용량 및 지하수이용부담금을 산정하여야 하며,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할 수도사업소의 하수도사용료 부과와 관련된 채수량 검침자료 등을 활용할 수 있다.

⑤유량계의 고장 등으로 지하수이용량을 알 수 없을 경우에는 전년도 같은 월의 지하수이용량으로 산정하고, 전년도 이용량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전 3개월 동안의 월평균이용량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에는 고장 난 유량계를 지하수개발·이용자로 하여금 즉시 교체하게 하고 봉인하여야 한다.

제16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구청장은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전산

용2)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할 수도사업소장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제17조(가산금) 구청장은 지하수이용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체납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제18조(부과액 조정 신청) ①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부과액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과액 조정신청이 있는 때에는 구청장은 30일 이내에 이에 대한 결정을 하고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과태료처분의 통지 등)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의 과태료 처분 및 납부통지서를 처분대상자에게 발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 및 납부통지서에는 위반사실·과태료금액·이의방법 및 이의기간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과태료 납부기간은 과태료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30일간으로 한다. 이 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10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하여 별지 제3호 서식의 과태료 납부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과태료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이라 함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기간이 종료된 다음날을 말한다.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위반내용 및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영 제44조 제3항 별표8의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태료부과기준에 의한다. 다만, 위반행위가 2 이상인 경우에는 중한처분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부과한다.

제21조(과태료부과처분에 대한 의견청취 등) ①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음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아니할 수 있다.

제22조(과태료에 대한 이의제기) ①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부과권자 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부과권자는 이를 검토하여 과태료처분이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3조(과태료의 강제징수)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독촉기간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강제 징수한다.

제24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부과권자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6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5조(준용규정) 과태료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세부과·징수의 예를 준용한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 이용부담금의 부과·징수는 2008. 7. 1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위반행위 조사서

1. 대 상 자

가. 법인(상호)명 :

나. 대 표 자 :

다. 법 인 번 호 :

라. 주민등록번호 :

마. 소 재 지 :

바. 연 락 처 : (전화) (팩스)

2. 위반내용

3. 위반사유(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술)

200 년 월 일

진술인 : (인)

[별지 제2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시 행 :

수 신 :

제 목 : 과태료 처분 통지

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하수법 제○조제○항의 규정에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가. 위반일시 :

나. 위반내용 :

2. 위의 위반사실에 대하여 지하수법 제○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3.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
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법원 에서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첨부 : 과태료납부통지서 1부

200 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3호서식]

과태료 처분 통지서

납 부 의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납부통지서번호				
위 반 사 항				
채 납 과 태 료 금 액	금 원 (₩)	당초납부 기일		

위의 과태료 금액이 체납되었으니 200○년 ○○월 ○○일까지 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위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200○년 ○○월 ○○일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별지 제4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

신청인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소		
과태료 처분내역	부과기준	납부통지서번호	
	고지받은일자	과태료 금액	
	과태료 처분사유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사유			

지하수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법원의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년 ○○월 ○○일

신청인 :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별지 제5호서식]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지서

시 행 :

수 신 :

발 신 : 인천광역시서구청장 (인)

제 목 :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통보

1. 지하수법 제41조제3항과 관련입니다.

2. 지하수법 위반자에 대하여 과태료 처분을 한 바, 다음과 같이 이의제기가 있어 통보하오니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하여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자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과태료 처분내역	고지일자		과태료금액
	이의제기일자		이의제기 사유

첨 부 : 1. 과태료처분통지서 1부.

2. 담당공무원 의견서 1부.

[별지 제6호서식]

과태료 수납부

[illegible]

인천광역시 서구의회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인천광역시서구청장권한대행
부 구 청 장 백 인 석

2008년 1월 15일

인천광역시서구조례 제944호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도로명사업 등에 관하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같은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장 도로명의 변경

제3조(도로명의 변경 요건) 영 제7조 제5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도로명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주소의 활용도와 편리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후 5년이 경과한 후 도로명 변경 신청일 현재 해당 도로구간의 도로명을 주소로 사용하는 법인·단체의 대표자 및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로서 20세 이상인 자(이하 “주소사용자”라 한다. 이하 같다)의 5분의 1 이상이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

제4조(도로명의 변경) ① 제3조 제2호에 따라 도로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신청을 받은 날 또는 제3조제1호의 사유로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 이외의 자도 도로명 변경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의견 제출기간은 1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도로의 현행 명칭과 희망하는 명칭(복수안)
2. 해당 도로명의 변경 추진사유
3. 도로명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자의 범위, 의견 제출의 방법 및 기간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의 변경 신청을 받거나 변경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인천광역시서구 새주소위원회에 상정·심의하여야 한다.

1. 변경 신청된 도로명의 연혁, 제정·변경추진 사유
2. 변경 신청된 도로구간의 건물번호 수 및 주소사용자 현황
3.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 및 조달방법
4. 도로명 변경에 대한 주민 및 구청장의 의견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심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심의결과와 변경절차(변경하기로 심의된 경우에 한한다) 등을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하며, 제3조 제2호의 경우에는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을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공고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에 대하여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도로명을 변경해야 한다. 다만,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서면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 그 결과를 공고한 날로부터 31일 이후 40일 이내에 신청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⑥ 제3조 제2호의 경우 주소사용자의 2분의 1 이상의 신청이 있고, 제3항의 심의결과가 도로명 변경 희망안의 1순위 도로명으로 변경하기로 한 경우에는 제5항에 규정된 주소사용자 2분의 1 이상에 대한 서면동의를 얻은 것으로 본다.

⑦ 구청장은 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에 대한 동의를 얻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산자료를 정리하고,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30일 이내에 변경된 도로명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조(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 ① 구청장은 영 제21조 및 제4조 제5항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부여하거나 변경하고 건축물 등의 소유자·점유자에게 도로명주소를 고지·고시하는 경우에는 영 제21조 제1항 제1호부터제3호까지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사

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이미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의 변경요건 및 절차에 관한 사항
 2. 고지 받은 사항에 대한 정정요청에 관한 사항
 3. 해당 도로명을 부여한 사유
 4. 법적주소의 전환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고지는 우선적으로 통·반장을 통하여 방문고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통·반장을 통한 방문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실시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우편물을 통한 서면고지를 2회 이상 실시하였음에도 고지가 이루어지지 못한 경우에는 공시송달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3장 건물번호판의 제작·설치

제6조(건물번호판의 규격)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의 그 규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로, 노(路)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20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1,0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하며, 길에 접한 건축물 등의 건물번호판은 가로·세로의 길이를 각각 15센티미터 이상, 면적은 500제곱센티미터 이상으로 함
 2. 건축물 등의 벽면에 글자(숫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붙이는 경우에는 글자의 가로·세로의 길이가 각각 20센티미터 이상(숫자 “1”의 가로길이는 예외로 한다)으로 함
 3. 옥외광고물에 건물번호판을 포함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표기된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외곽선을 연결한 폐다각형의 내부면적이 제1호에서 정하는 규격 이상으로 함
- ② 건물번호판에는 도로명과 건물번호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제7조(건물번호판의 자체 제작·설치) ① 영 제9조 제5항에 따라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건물번호판을 자체 제작·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구청장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사항의 검토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서 신청인이 건물번호판을 설치하도록 통지받은 경우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건물번호판을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있는 위치에 운전자·보행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설치한 후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설치완료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건물번호판의 재교부) 구청장은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의 재교부 신청을 받은 경우 신청인에게 건물번호판 설치위치 및 방법, 제작·설치비용, 비용의 납부방법(신청인이 부담해야 할 경우에 한한다), 건물번호판의 교부시기(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로 한다) 등을 안내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건물번호판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건물번호판 교부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4장 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제9조(도시개발사업 등에 따른 도로명시설 설치) ① 구청장은 법 제10조 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의 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에게 사업시행을 승인하는 때에는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②시행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과 건물번호 부여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사업 준공예정일(건축물의 경우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 90일 이전에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인가서

2. 사업계획도(축척 3,000분의 1 이상)

③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신청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도로명시설을 자체 제작·설치할지 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하여야 한다.

1. 새로이 부여된 도로명 및 건물번호

2. 사업지역에 설치할 도로명시설의 종류, 위치 및 수량

3. 도로명시설의 설치비용·기간

4. 도로명시설을 구청장이 설치하도록 할 경우의 비용 납부방법(법 제10조제2항 규정 관련)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④제3항에 따라 자체 제작·설치여부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시행자는 요청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도로명시설의 직접 설치여부를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10조(도로명시설의 설치 확인) ①시행자가 제9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설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각종 개발사업에 관한 준공 신청(건축물의 경우는 임시사용·동별사용 승인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도로명시설의 설치를 확인한 후 준공처리하여야 한다.

제5장 도로명의 사용 및 자료의 구축

제11조(도로명사업에 의한 도로명의 사용의무) 구청장이 관리하는 모든 도로의 명칭(노선명)은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된 도로명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부여한 도로명의 도로구간이 관련법령에 의하여 개설된 도로의 도로구간을 포함하지 못하는 경우는 다른 명칭(노선명)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도로명 관련 자료의 제출) ① 구의 도로·건축물·국토이용계획·지적 등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은 도로명주소와 관련되는 사항의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련 자료를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도로명사업담당부서의 장은 제1항의 통보에 따라 정리한 도로명주소 등을 해당 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도로명기본도의 작성) 구청장은 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작성·관리하는 도로명기본도에 배경자료(철도, 호수, 하천, 공원, 교량 등을 말한다)와 보조자료(건축물 군, 교차로, 지하철·철도역사, 관광지 등을 말한다)가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도로명 등의 시스템에 반영) 구청장은 도로구간의 현황, 도로별 해당 도로명의 부여·변경사유 및 부여·변경일자 등을 도로명관리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6장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및 위탁 등

제15조(건물번호판의 설치안내 등)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제2항 및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일제 조사한 결과, 훼손·망실된 건물번호판이 발견된 때에는 법 제16조 제2항에 따라 신청·설치하도록 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4조에 따라 훼손·망실된 도로명시설을 재설치하기 위한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

제16조(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 위탁) ① 구청장은 법 제13조 및 영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사업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명시설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지방공기업법상의 지방공사·공단
2. 최근 5년 이내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도로명 관련시설의 설치 또는 유지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도로명시설의 종류, 수량, 위치

2. 계약기간 및 금액
3. 도로명시설의 관리 및 정비계획
4. 도로명시설 일제조사 계획
5. 도로명시설의 훼손·망실에 따른 조치계획
6. 도로명시설의 안전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계획
7.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제17조(도로명시설의 점검) ① 구청장은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탁한 경우 위탁한 상대방(이하 “수탁자”라 한다)과 합동으로 연 1회 이상 도로명시설의 이상 유무를 조사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도로명시설이 훼손·망실되었거나 훼손·망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을 조사하여 구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수탁자의 지도·감독) 구청장은 수탁자가 도로명시설을 성실히 유지 관리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7장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

제19조(광고사업자의 선정절차 등) ① 구청장이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도로명시설에 광고를 하게 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2항의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10일전에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에 대한 광고계획
 2. 도로명주소안내도(종이와 전자매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종류, 제작수량
 3. 안내표지판의 종류, 제작수량, 설치위치, 규격
 4. 광고사업 참가자격
 5. 광고사업 신청 장소, 기간, 제출서류(제2항의 서류를 말한다)
 6.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② 제1항에 따라 광고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광고사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의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③ 제2항에 따라 광고사업신청서를 제출받은 구청장은 광고사업신청서 제출마감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광고사업자를 심의한다.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등

④ 제3항에 따른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과 배점기준은 별표1과 같이 하고, 배점 부여기준은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정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에게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에서 심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통보하고, 공보·홈페이지 등에 공고한 후 그 내용을 별지 제6호 서식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20조(광고사업계약의 체결 등) ① 구청장은 선정된 광고사업자와 10일 이내에 광고사업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광고사업계약서에는 계약의 목적, 광고사업에 관한 구체적인 실행계획, 광고주의 모집방법, 게재할 수 없는 광고물의 범위, 제작·설치된 안내표지판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광고사업자는 광고주를 모집하여 도로명주소안내도와 안내표지판의 제작을 위한 시안을 작성한 후 구청장과 협의·확정하여야 한다.

제21조(광고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구청장은 광고사업자의 광고사업에 관하여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8장 도로명주소의 사용 촉진

제22조(도로명주소의 홍보·교육) ① 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도로명주소를 홍보하기 위하여 손수건, 휴대용 화장지, 부채, 자, 저금통, 달력, 접지형 지도, 컴퓨터용 마우스패드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관할 주민에게 배포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민방위·예비군교육, 각종 단체의 회의·행사·교육 등에 도로명주소에 대한 교육이 실시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시책 추진) ① 구청장은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촉진을 위해 법 제22조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도시철도 역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여객자동차 터미널, 여객터미널, 공항 등 다중이용시설에 새주소안내도 부착, 새주소안내표지판 설치 등 새주소 안내시설 설치

2. 각종 버스정류장 및 철도역사 등의 위치표시체계에 도로명주소방식 도입

3. 관내 산하기관, 민간단체 등의 도로명주소 생활화 촉진 사업 지원

4. 그밖에 구청장이 도로명주소의 생활화 촉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9장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 등

제24조(위원회의 구성) ① 영 제26조에 따라 설치되는 인천광역시 서구 새주소위원회 (이하“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공무원이 아닌 자가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2분 1 이상이 되도록 한다.

1. 구의회 의원
2. 도로명 사업과 관련된 관계공무원
3. 도로명사업 및 도로교통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자
4. 구의 특성과 역사, 지리 등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25조(위원의 임기 및 해촉) 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2회에 한하여 연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위원이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의 사유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는 때
3. 위원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때

③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 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위촉된 날로부터 새로이 시작한다.

제2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로명의 부여·변경(도로구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
2. 도로명주소의 고지·고시에 관한 사항
3. 도로명시설의 유지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4. 도로명시설을 이용한 광고사업자의 선정에 관한 사항
5. 도로명주소의 사용촉진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구청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제27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구청장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위원장은 그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소집일 7일전 까지 회의의 일시, 장소, 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연장자순의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9조(간사)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도로명사업 담당부서 업무담당이 된다.

②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심의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
2. 위원회의 업무에 관한 사무처리
3. 위원에 대한 자료 협조
4.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 등

제30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회의록으로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3. 토의 및 진행사항
4. 위원·참석자의 발언요지 및 심의결과
5.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1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구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기타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32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도로명사업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행한 도로명사업에 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별지 제1호서식](앞쪽)

도로명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도로명	현행				
	변경희망안	1순위 :			
		2순위 :			
		3순위 :			
변경 신청사유					
희망안별 부여사유	1순위 :				
	2순위 :				
	3순위 :				
건물번호수					
주소사용자수					
변경 동의자수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도로명
변경을 신청합니다.

첨부 : 도로명 변경 동의자 명부(뒤쪽의 양식 활용) ○○부.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뒤쪽)

도로명변경 동의자 명부

[illegible]

[별지 제2호서식]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신청서				처리기간
				7일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자체 제작·설치를 신청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계획서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		
도 로 명				
건물번호				
건물번호판	규격			
	모양			
	재질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건물번호판 설치 완료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건물번호판 설치사진 2매

(근경사진 1매, 건물 1/3이상 포함된 전경사진 1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도로명부여 신청서				처리기간
				50일
신 청 인 (사업시행자)	성 명 (사업시행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		
사 업 명				
토지소재				
인 가 내 용	사업구분			
	사업기간			
	인 가 일			
	면 적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9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부여를 신청합니다. 첨부 : 1. 사업인가서 1부. 2. 사업계획도 1부. 년 월 일 신청인(사업시행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광고사업 신청서				처리기간
				32일
신청인 (대표자)	성명 (대표자)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		
신청내용		1. 도로명주소안내도 2. 안내표지판		
수 행 능 력	인력구성			
	자산규모			
	최근3년간 수행실적			
	기타 실적			
인천광역시 서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광고사업자 선정을 신청합니다. 첨부 : 1. 도로명주소 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제작·구성계획 2. 자금조달계획 및 광고주 모집계획 3. 안내표지판의 규격, 재질, 디자인 등에 관한 설계도서 4. 그 밖에 광고사업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서구청장 귀하				

210×297mm(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표 1]

광고사업자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제19조제4항 관련)

항 목	세 부 항 목	배점	비고
계		100	
1. 광고사업자의 수행 능력		15	
	가. 당해 광고사업에 참여할 인력구성	(5)	
	나. 최근 3년간 영업실적	10	
	- 광고 수행실적	(5)	
	- 기타 영업실적	(5)	
2. 광고사업 수행의 실현 가능성		30	
	가. 제작비용 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	(15)	
	나. 광고주 모집방법의 실현가능성	(15)	
3. 도로명주소안내도 및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합성		30	
	가. 도로명주소안내도의 적합성	30	
	- 안내도 종류별 규격의 적정성	(5)	
	- 광고지면의 비율	(5)	
	- 안내도 구성의 참신성	(5)	
	나. 안내표지판의 적합성	15	
	- 안내표지판 디자인의 참신성	(10)	
	- 안내표지판 구성의 적정성	(5)	
4. 그 밖에 도로명사업에 대한 기여도		25	
	가. 목표대상(인지도 제고)의 적절성	(10)	
	나. 비용대비 효과성	(5)	
	다. 안내도 배포 계획의 효율성	(10)	